

## 제 103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3년 1월 22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단기 4293년 1월 22일 하오 4시 35분

3. 장 소: 목포시 의회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삼성

5. 출석 의원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 공무원

부시장 박종국 및 재무, 호병 사회건설 각 과장

박 시정계장, 교육청 사무장 이현두

7. 의사 일정

### ◆보고사항

(1) 제 102회 제 3, 4, 5, 6, 7차 회의록 통과

(2)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

· 감사장 - 목포 지방 해무청축항 사무소장 황이명

한국 미곡창고 주식회사 목포지점장 이태용

천생건설 주식회사 삼학도 공사 부사장 정진수

· 표창장 - 목포시 산업과 지방서기 김재석

(3) 부의사항 관외(서울) 출장 결과보고

(4) 의안 제 297호 목포시 동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의안 제 298호 목포시 의회 의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6) 의안 제 299호 목포시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안

(7) 의안 제 300호 목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 (8) 의안 제 301호 시립 목포 병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9) 의안 제 302호 목포시 직업소개소 조례 재정안
- (10)의안 제 304호 목포시 교육 위원회직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11)단기 4293년도 제 1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출개정 예산안

## 8.토의 사항

※제 102회 제 3, 4, 5, 6, 7회의록 통과

### ◇서기 주 도 식 낭독

- 이의 없음으로 통과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

### ◇김 삼 성 의장

- 당 시의 삼학도 축항공사 및 항만 준설공사에 있어 당 시 시 세발전에 공헌한바 지대하신 목포 지방해무청 축항사무소장 황이명씨, 삼학도 축항공사 공로가 많으신 천생건설 주식회사 삼학도 공사장 부소장 정진수씨, 선량한 업자로서 정부 관리 양곡보관 관리에 있어 사고방지, 보관방법이 우수한 한국 미곡창고 주식회사 목포지점장 이태용 씨 등 각각 감사장을 수여하고, 정부관리 양곡 보관 관리 사무 담당하던 당시 산업과 근무 김재석에게 표창장을 수여함.

### ◆보고사항

#### ◇김 의원 보고

- 금년도에 시내 각 국민학교에서 배출되는 여자 졸업 아동수가 1,771명이 고 그 중 진학 아동수가 타군에서 전입하는 예년의 실상에 비추어 추산 아동수 약 150명을 합하여 1,383명인데 시내 목여중, 정명여중 및 중앙여중 등에 840명은 수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약 550명은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 문정 과장과 중등계장 등을 만나서 당시에 여중 「T O」 하나를 더 증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문교시책으

로 보아 여중의 증설은 곤란하나 목여중에 각 각 한 학급, 정명여중에 두 학급으로 증설하여 준다는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명여중 두 학급 증설에 있어서는 선교재단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외(서울) 출장결과 보고

◇김 삼 성 의원

- 우리 의원 9여명이 서울에 출장하여 체신부를 방문하여 공업고등학교에서 목포우체국청사 불하 진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재차 부탁하여 목포우체국에서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불하 하여준다는데 확약을 받고 외자청을 방문하여 많은 외자도입을 부탁하였고, 내무부를 방문하여 남교동 시장 복구 공사를 조속히 완공을 하여준다는데 지방국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았고, 상공부를 방문하여 목포지방은 매일 송전과 더 많은 양을 보내준다는데 합의하는 등 당시발전에 수반한 제반 애로를 중앙 당국에 절충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수년동안 목포시 행정을 맡아보던 하 시장이 임기 만료로 그만두고 박찬규 시장이 후임으로 취임한바 초대 의회생활을 겪은 박 시장의 후덕과 양심적이라는데 기대가졌으나, 거반 집행부에서 단행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목포시의 인사이동은 전국적으로 「썬세이션」을 야기시키고 십년 이상 근무한 주무자급을 이유도 없이 대기 또는 전출을 시킨바 있는데 이에 있어 집행부도 이유가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실정을 알아야 될 만큼 인사문제를 비롯한 제반 행정에 대한 대 집행부에 질의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 삼청이 들어오다.

- 표결하여 찬성표가 재석 15명 중 가 5명이므로 부결되다.

◆부의 안건

◇박 시 정 계장

- 1항부터 6항까지 및 8항을 제안이유 설명하다.

◇이 현 두 교육청 사무장

- 7항의 교육위원회 직제 개정의 제안이유 설명하다.

◇정 응 표 의원

- 이번 회기에 부의안건 1항부터 8항까지는 모두 상부의 지시에 의한 시 조례의 일부 개정이니 각 전문분과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고 의사결정 2일간을 1일간으로 단축하여 오늘로써 끝을 맺자는 동의.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바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김 경 인 의원

- 김성균 의원의 여중문제 보고 보충 발언을 하다. 당시에 4학급 증설이 부족하니 정명여중 선교회에 필히 2학급 증설토록 시 의회에서 건의토록 동의 하여 재청 삼청이 있었다. 그 다음, 명년 당 시에 여중 또는 여고의 증설이 필요하니 신설학교를 건축케 하는 것을 문교부에 절충하여 중학교의 「T O」를 하나 더 얻도록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었다.

◇김 삼 성 의장

- 3인 의원에게 위촉하자는 의견에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김 경 인 의원

- 거반에 냉동시설에 있어 관계당국에 건의한바 있으나 반응이 없던 중, 지난 16일부로 극동 판초자 공업회사에 인천에 있는 유리 공급회사와 같은 규모의 판초자 공장 설치 후보지로써 당시를 책정하여 동공장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대지 7천평내지 1만 5천평을 시 에서 알선해 줄 것과 여기에 소요된 전력 300KW와 용수 일당 500톤의 확보 등 유무를 문의하여 음으로써 판명된 것인데, 이의 낭보를 접하고 12군데 대지를 물색해서 2, 3일 전에 그 회신을 발송하였을 것이나 전력과 용수확보에 있어서는 소소한 사적인 애로를 타개하고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당시에 판초자공업을 유치하는데 관계기관에 진정 할 것을 당 시 의회에서는 교섭 의원을 파견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삼 성 의장

- 진정단의 의원구성을 김남진, 김상태 의원을 지명하다.

◇김 상 대 의원

- 근간 모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남교동 공설시장은 화재이후 상인들의 형편이 쇠퇴일로에 있음에 반하여 번영회니 진흥회니 하는 회비가 일년이면 1천만원에 달한다는 바와 같은 영세상인들의 출혈를 막고 운영면의 쇄신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장번영회의 실태조사를 5인 이상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겸하여 실지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 포탈료 징수상황을 조사하여 폐지토록 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정 응 표 의원

- 조사단을 구성하되 본회중이라도 조사위원의 합의로 이를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할 것을 첨가, 동의 집을 수락한다. 표결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삼 성 의장

- 본 조사 의원으로 정응표, 천철수, 유상대, 김남진, 김상태, 김성균, 김삼성 의원 등 7인을 지명하다.

◇김 삼 성 의장

- 오후 회의는 시간을 정하지 않음.  
정회선언 (상오 11시 55분)  
속개선언 (하오 3시 55분)

※천 철 수 내무분과 의원장 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

1. 목포시 동세 개정 조례 안 - 원안통과
2. 목포시 의원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 안에 있어서는 제 3, 4, 6조를 삭제하

여 수정통과

3. 목포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안 - 원안통과
4. 목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안 - 원안통과
5. 시립목포병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있어서는 제 22조의 「약국」을 「피부 비뇨기과」로 정정, 제 6조의 「정부의」와 제 7조를 각각 삭제하여 일부수정 통과
6. 목포시 직업소개소 조례 판정 안 - 원안통과
7. 목포시 교육 위원회직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 원안통과
8. 단기 4293년도 제 1회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안 - 원안통과

◇김 삼 성 의장

- 부의 안건 전부를 일괄 상정 선언

◇김 창 희 의원

- 부의 안건 제 1항부터 제 8항까지를 일괄하여 제반 절차를 생략할 것을 동의하다.

◇김 경 인 의원

- 시 조례 제3조의 각 의과의 장에는 의사 다음으로 치과과장에는 치과 의사를 순서를 변경 수정할 것을 동의집에 첨가 요청하며 이를 통과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금반 조례안 등이 지난 예산의회인 정기회기중에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제안하게 되는데 대하여 그 당시시 정주무인 박 과장에게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동 직원이 지방공무령을 적용받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 박 시정계장은 동 직원은 별정직이라 하여 지방공무령(공무원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기로 본 의원이 동 직원 임면에 관한 규칙을 펼쳐보니 동직원도 지방공무령의 준용을 받게 되어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시정계장이 과장직에 보직되는 반면, 10, 20년 근무한 직원을 동(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간에 반목케한 일을 생각하면 박 시정계장을 문책하고 남음이 있으나 불신임 또는 문책을 하는 등의 동의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경인 의원 요청으로 동의 집을 수락하다.
- 김창희 의원 동의를 표결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김 경 인 의원 규칙발언

- 규칙 발언을 얻은 김경인이 올시다. 정응표 의원이 인사문제 질의를 동의 하였으나 시장은 병환으로 총무과장은 출타 중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목포시는 모든 법규에 위반하고있다. 집행부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의회자체가 묵과할 수 없으니 집행부가 범법행위를 시정하고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김 성 균 의원

- 규칙 발언이라 하면 회의 규칙 등에 관한 발언 하에 한다. 의장은 김경인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규칙 발언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면 다른 안건으로 나아 갈려한다.
- 목포시 인사행정에 관한 난맥상을 지사에게 건의 할 것을 긴급 동의한다.

◇정 응 표 의원

- 지사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다. 당사자인 시장과 총무과장이 부재중인데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시비를 들어 시정 하지 않으면 그때 건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김 경 인 의원

- 지사에게 건의하자 하였으나 정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으니 지사는 차후 기회로 미루고 시청내부가 난맥상이니 시장에게 건의하자.

◇김 삼 성 의장

-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선언하다.

◇김 삼 성 의장

- 폐회를 선언.

(하오 4시 2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날인함

단기 4293년 1월 24일

시의원 김남진

시의원 김상태

작성자 서기 배문봉